

상 조 회 칙

제정 1987. 10. 16	개정 1997. 4. 16	개정 2010. 4. 1
개정 1990. 3. 1	개정 2001. 6. 1	개정 2010. 4. 30
개정 1992. 3. 1	개정 2002. 4. 1	개정 2011. 4. 1
개정 1992. 5. 18	개정 2002. 7. 29	개정 2012. 11. 7
개정 1993. 4. 1	개정 2003. 4. 1	
개정 1993. 12. 16	개정 2004. 5. 1	
개정 1994. 5. 1	개정 2007. 4. 1	
개정 1995. 4. 1	개정 2008. 4. 1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상조회(이하 "본 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회는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경조금/전별금 지급
2. 삭제
3. 기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업

제4조(구성 및 업무처리 기준) 본 회에는 회장, 간사, 대의원회 및 감사를 둔다. 본 회의 사업 및 본 회와 관련된 업무는 본 회칙에 근거하여 회장이 집행하며, 세부적인 업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간사가 수행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5조(자격) ①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그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.

1. 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임교수(방문교수, 대우교수, 박사연구원, 조교제외)
2. 대학 및 법인 정규직원(축탁직 포함)
3. 상근계약직원
4. 2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원
5. 가속기연구소 계약직 전임 석사·박사연구원

② 전임조교로서 가입희망자는 대의원회에서 따로 결정한다.

③ 위의 자격자는 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(별표2)의 교직원상조회 가입 동의서를 제출하여야

한다.

제6조(자격정지) ①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이 정지되며, 기 납입한 회비는 상환하지 않는다.

②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.

제 3 장 회 의 운 영

제7조(임원 및 대의원회)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 및 대의원회를 둔다.

① (임원) 본 회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: 행정처장(당연직)
2. 감사 : 교수 1인, 직원 1인

② (대의원회)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.

1. 당연직 : 회장
2. 선출직 : 교수 3인, 직원 4인 (대학 3인, 가속기 1인)

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보선에 의하여 임명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⑤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.

제8조(대의원회 기능)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
2. 회칙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회비의 조정
4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1. 교수 : 교무처장
2. 직원 : 행정처장
3. 가속기연구소 : 가속기연구소장

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.

④ 감사는 교수 1명, 직원 1명으로 제2항에 의거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.

⑤ 감사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다만, 본 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9조(대의원회의 소집)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년도 초에 회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대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기금조성 및 관리

제10조(기금조성) 본 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성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회원의 기부금
3. 수익 사업의 이익금
4. 기타 수익금

제11조(회비) ① 회원은 매월 20,000원을 회비로 납부한다.

②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당시의 급여액(1개월분)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회비를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(삭제: 2002. 7. 29)

제12조(기금관리) 본 회의 기금은 제3조 제2항과 금융기관 또는 이를 취급하는 기관에 저금하여 관리하며, 간사는 현금시제를 운영할 수 없다.

제 5 장 경 조 금 및 전 별 금

제13조(지급금액) 경조금 및 전별금의 종류와 지급금액은 (별표 1)과 같다. 단, 동일건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14조(신청 및 지급) 경조금 및 전별금 수급대상 회원은 POVIS시스템(Human Resource-경조금신청)으로 신청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한다.

제 6 장 대 부 (삭제)

제15조 (삭제)

제16조 (삭제)

제17조 (삭제)

제18조 (삭제)

제 7 장 예 산 및 결 산

제19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한다.

제20조(예산) 연간 특별사업에 따른 예산서는 회계년도 개시전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
제21조(결산) ① 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

② 감사는 결산서를 감사하고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 8 장 회 칙 개 정

제22조(발의) 회칙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의한다.

1.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시
2. 회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시

제23조(의결) ① 회장은 회칙개정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칙개정은 제9조 제3항에 의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94년 5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1997년 4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배우자 회갑 경조금은 1997년 3월 1일부터 호적등본에 의거 소급 적용한다

부 칙

1. 시행일 : 이 회칙은 2001년 6월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가. 이 회칙 중 제 6장 대부조항(제15조, 16조, 17조, 18조)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나. 이 회칙의 개정으로 상조회 대부 시행지침은 개정일부로 폐지한다. 단, 폐지일 이전 기존 적용자는 상환이 완료 될 때까지 종전의 시행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회칙중 제3조(사업), 제11조(회비)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, 제5조(자격) 제2항의 "법인으로 전보된 대학직원 중 본인 희망자"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, 연봉계약직원 2000년 4월 1일부 가입, 제8조(대의원회 기능)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2년 7월 2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조금지급 기준) 배우자회갑 축의금은 회원 본인회갑 축의금과 통합 지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연봉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시 가입. 단, 현 상조회원인 연봉 계약직원은 회원 자격 유지
3. 경조사 동일건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이 회칙 중 제 2장 회원조항(제5조 1항의 3호, 4호, 5호)에 대해서는 가입여부는 본인이 결정하고 가입일 이전 경조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3. 이 회칙 중 제 3장 회의운영조항(제7조 2항의 2호)에 대해서는 차기대의원을 선출(2011년 4월)할 때 시행 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0년 4월 3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12년 11월 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이 회칙 중 제 2장 회원조항(제5조 3항)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는 동의로 간주하고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.

(별표 1)

경조금 및 전별금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종 별	지 급 금 액	비 고
축 의 금	본인결혼	600,000	- 경조사 동일건 1회 지급 - 본인회갑시 배우자 통합지급 - 주민등록등재 자녀 - 장례용품 지원(05.4월부) - 정년(명예)퇴직자 요청시 실비부담으로 조문용품 지원(300,000원 상당)
	자녀결혼	500,000	
	부모회갑	500,000	
	배우자부모회갑	500,000	
	본인회갑	1,300,000	
	배우자회갑	-	
조 의 금	본인사망	10,000,000	
	배우자사망	4,500,000	
	자녀사망	1,500,000	
	부모사망	900,000	
	배우자부모사망	900,000	
	친조부모사망	500,000	
	친족승중상	500,000	
	친형제자매	100,000	
전 별 금	3-5년 재직회원	150,000	
	6-8년 재직회원	300,000	
	9-11년 재직회원	600,000	
	12-14년 재직회원	900,000	
	15-17년 재직회원	1,200,000	
	18-21년 재직회원	1,500,000	
	22-37년 재직회원	22년이상 1년 초과시마다 5만원 추가 (총2,300,000)	
기 타	장례보조비(본인사망)	1,500,000	- 상조회에서 현금 또는 장례비용으로 집행
	본인 1주일이상 질병치료 위로금	100만원 한도내에서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	

